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66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3.

발 의 자: 박재호·이수진·강병원

김윤덕 · 오영훈 · 정춘숙

김정호 · 한병도 · 위성곤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,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여 복잡·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첨단 안전기술 등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 할 수 있음.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시장이 성장하고 있고,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·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고, 재난안전산업에 있어서도 미래 4차산업 및 loT를 융합한 신기술 개발 촉진·보급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마련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육성·지원 정책이 필요함.

이에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, 정보관리시스템 구

성,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 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중 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다.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(안 제7조).
- 라.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·연구실태·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·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·조 사하여 관리, 보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

운영할 수 있게 함(안 제8조).

- 마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함(안 제9조).
- 바.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재난안전기술 수준의 조사, 연구 개발,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게함(안 제10조).
- 사.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,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함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.
- 아.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(안 제14조 및 제15조).
- 자.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재난 안전제품 또는 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함(안 제16 조).
- 차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체, 공공기관, 재난안전관 런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고, 재난안 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 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함(안 제17조 및 제20조).

- 카.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고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·지원할 수 있게 함(안 제18조 및 제19조).
- 타.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,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(안 제 23조).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재난안전산업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(이하 "재난"이라 한다)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·장비·시설·제품 등을 개발·제작·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2. "재난안전기술"이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.
- 3. "재난안전제품"이란 재난안전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용화가 완료 된 제품으로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재난 등을 경감하거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.
- 4. "재난안전사업자"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

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재난안전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
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
 - 3.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- 4.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
 - 5.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6.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
- 7.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·내용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재난안전산업 정보의 제공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

- 업의 기술수준·연구실태·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·외 재난 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·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 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제9조(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,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을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 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·훈련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의 촉진)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 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

하여야 한다.

- 1. 재난안전기술 수준 조사
- 2.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
- 3. 개발된 재난안전기술 평가
- 4. 재난안전기술의 협력·이전 등 실용화
- 5. 재난안전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
- 6.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3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

- 제11조(재난안전인증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(이하"인증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,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, 인증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

공고하여야 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연장을 받은 자는 인증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(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의한 홍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인증의 심사·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인증 대상, 절차,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인증의 사후관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재난안전제품 등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(이하 "점검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 - ② 점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인증의 취소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- 2.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한 경우
 - 4. 전업·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을 생산하기 어렵

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로 개발된 재난안전기술 또는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(이하 "신기술"이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신기술의 지정 또는 지정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,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연장을 받은 자는 지정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(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

- 에게 재난안전기술에 대한 심사·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대상, 절차,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신기술 지정 취소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신기술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 - 3.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 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 - 4. 해당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
 - 5.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우선활용 권고)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제1 1조에 따라 인증된 재난안전제품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 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.

- 제17조(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·조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체, 공공기관, 재난안전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·외 재난안전산업체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(이하 "진흥단지"라 한다)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진흥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 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·연구
 - 2.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·인력 및 정보의 교류
 - 3. 재난안전산업 전시회·학술회의의 개최
 - 4.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
 - 5. 재난안전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·상담·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
 - 6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

- 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1.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
- 2.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·인력·정보의 국제교류
- 3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9조(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 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자의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 개발자에게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의 대상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·운영) 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 여 재난안전산업협회(이하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
 - 2.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

- 3.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- 4.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
- 5. 재난안전사업자의 저작권,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
- 6.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재난 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-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,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21조(포상)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·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(褒賞)할 수 있다.
- 제22조(청문)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1.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해제
 - 2.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

- 3.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
- 제23조(권한의 위탁)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의 실시
 - 2.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
 - 3. 제10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
 - 4. 제11조에 따른 인증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 취소
 - 5.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제15조에 따른 지정 취소
 - 6. 제18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 - 7. 제19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
 - 8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- 제24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.
- 제2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
- 2.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제2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

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